

##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

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### 1. 모집개요

- 시 설 명 : 용산구 창업지원센터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7, 원효전자상가 6동 3층 일부
- 모집규모 : 2인실 - 3개 기업
- 지원내용 : 입주공간 사용 (사용시간 : 월~토 08:00~20:00) ※ 사용시간 외 이용불가
- 입주기간 : 1년 (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)
- 입 주 일 : 2026. 8월 중 (예정)
- 입주비용

전용면적	연간임대료 (2026년 기준)	보증금 (입주 시 납부)	관리비	주차료
13.5㎡ (2인 기준)	2,514,300원	480,000원	매월 부과	유료 ※ 원효전자상가 관리규정에 따름

- 신청자격 (①~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)
  - ①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,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- ② 사업자등록지를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

○ 신청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
- 휴 · 폐업중인 자
- 환경관련 법규에서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- 창업목적, 창업아이디어,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(유흥주점 등)
-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자
-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- 기타 용산구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○ 우대사항(서면평가 가점 부여)
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대표자
- 모집일('26.5.29.) 기준 용산구민 및 구 소재 기업(1년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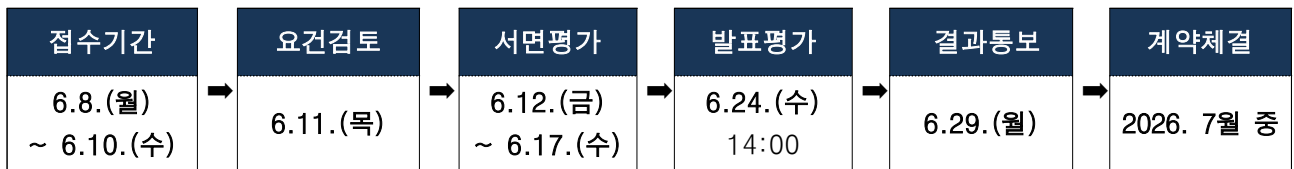
2. 모집일정

- 접수기간 : 2026. 6. 8.(월) ~ 6. 10.(수), 09:00 ~ 18:00 (근무시간 중)
  - 제외시간 : 12:00 ~ 13:00 (중식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  - 접수처 :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(녹사평대로 150)
- 제출서류 ※ 접수 마감시까지 구비서류 일부라도 누락한 경우 탈락 처리

구비서류	비고
1. 입주승인 신청서	별도 첨부 양식
2. 사업계획서	별도 첨부 양식
3. 개인정보 수집 · 제공 동의서	별도 첨부 양식
4. 사업자등록 및 이전 확약서	별도 첨부 양식
5. 대표자 주민등록초본	대표자에 한함(주소변동이력 포함) * 모집공고일('26.5.29.) 이후 발급분
6. 사실증명원	☞ 예비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발급 ☞ 기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발급 * 모집공고일('26.5.29.) 이후 발급분 *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
7. 사업자등록증	해당 소지자에 한함 ☞ <b>다수의 사업자</b> 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입주신청 해당 기업 포함 <b>전체 사업자등록증</b> 제출
8.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	해당 소지자에 한함 * 모집공고일('26.5.29.) 이후 발급분
9. 국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 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 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6.5.29.) 이후 발급분
10. 지방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 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 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6.5.29.) 이후 발급분
11. 벤처기업확인서, 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	해당 소지자에 한함

○ 세부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.

3. 평가방법 및 절차

○ 1차심사 (서면평가)

-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 선발
- 동점자 처리기준 : 사업성, 기술성, 창업의지 및 역량 점수가 높은 기업 순 선발
- ※ 신청기업이 발표평가 대상기업 규모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< 서면평가 항목(안) >

평가항목(안)		
1	<b>창업의지 및 역량 (30점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창업자 및 직원 역량</li> <li>■ 사업계획서 충실도</li> <li>■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</li> </ul>
2	<b>사업성 (40점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계획의 구체성, 현실성, 확장성</li> <li>■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</li> <li>■ 사업아이템 차별성</li> <li>■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</li> </ul>
3	<b>기술성 (30점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</li> <li>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, 품질, 성능 (특허, 인증 등 보유 여부)</li> <li>■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</li> </ul>

○ 2차심사 (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)

-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실시
-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 승인
- ※ 참여기업이 모집예정 기업 수 이상일 경우 공실 대비 예비 입주자 선정

< 대면평가 항목(안) >

평가항목(안)		
1	창업의지 및 역량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창업자 및 직원 역량</li> <li>■ 사업계획서 충실도</li> <li>■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</li> </ul>
2	사업성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계획의 구체성, 현실성</li> <li>■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</li> <li>■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및 확장성</li> <li>■ 사업아이템 차별성</li> <li>■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</li> </ul>
3	시장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목표 시장 이해 및 경쟁자 분석</li> <li>■ 사업아이템 시장 반응</li> <li>■ 사업아이템 확장 가능성</li> <li>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</li> </ul>
4	기술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</li> <li>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, 품질, 성능 (특허, 인증 등 보유 여부)</li> <li>■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</li> </ul>
5	공간지원 필요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동기 및 창업공간 활용계획의 타당성</li> </ul>

○ 결과 발표 : 2026. 6. 29.(월) 예정

-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유선 통보

4. 유의 사항

- 1차심사(서면평가) 합격자는 6.19.(금) 공고 예정이며, 6.22.(월) 오후까지 발표자료 등 제출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(발표자료는 10p이내 핵심정보만 담아서 작성)
-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용산구청 사전연락 필수 (발표는 대표 1인만 참여)
-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,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 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,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

-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  -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
  -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
  - 휴·폐업한 경우
  -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 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
  -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(예비창업자)
  -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(기창업자)
  -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(음주, 기물파손, 소음공해 발생 등)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
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등
-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(매출실적 등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

5. 문 의 처 :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☎ 02-2199-4515